

# 법원 및 인터넷에 공개된 첨단기술 문서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건

19 Religious Techonology Center v. Lerma, 908 F.Supp.1362 (1995)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방 법원	사건번호	Civ. 95-11	A. .07–A.	No.
판결 일자	1995.11.28	판결 결과	전부 7		
원고 (피항소인)	릴리저스 테크놀로지 센터 (Religious Technology Center)				
피고 (항소인)	알날도 파그리아리나 러마 (Arnaldo Pagliarina Lerma), 디지털 게이트 웨이 시스템스 (Digital Gateway Systems),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마크 피셔 (Marc Fisher), 리차드 라이비 (Richard Leiby)				
참조 법령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참조 판례	Trandes Corporation v. Guy F. Atkinson, 996 F.2d 655, 660 (4th Cir.1993); Smith v. Snap-On Tools Corp., 833 F.2d 578, 581 (5th Cir.1988)				
영업비밀	첨단기술 문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저작권, 공정 사용, 부	-적절한 수단			

### 02 사건 개요

싸이언톨로지교(Church of Scientology)는 해당 종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전 신자 피시맨 (Fishma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시맨은 선서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선 서진술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첨단 기술자료 69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시맨의 선서진술서를 봉인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싸이언톨로지교의 또 다른 전 신자인 피고 러마는 피시맨 선서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첨단 기술자료 문서를 취득하였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피고 디지털 게이트웨이 시스템 스를 통해 배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피고 러마의 추가적인 문서 배포를 금지하는 긴급 유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1)을 신청하여 숭인받았고, 피고 러

마의 컴퓨터 등이 압수되도록 하였다.

그 즈음 피고 러마는 피시맨 선서진술서와 첨부 문서들을 피고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 기자인 피고 라이비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가 장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 라이비는 다시 피고 러마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 워싱턴 포스트는 피시맨 선서진술서의 복사본이 미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공개 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복사본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피시맨 선서진술서 복사본을 취득한 다음날 법원에 공개 기록 밀봉 명령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취득한 복사본에 대한 반환 명령이나 유지명령은 없었다. 그 후 피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피고 피셔는 싸이언톨로지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여기에서 원고의 첨단기술 문서 중 3개의 문서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 3개(약 46 단어)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위반 및 영업비밀 부정취득 등을 주장하며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sup>2)</sup> 신청을 하였다.

 $\Rightarrow$ 

 $\langle \neg$ 

## 03 주요 쟁점

## 원 고

원고의 첨단기술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저 작권법 위반이다.

피고 워싱턴 포스트는 첨단기술 문서가 장물일수 있고 원고의 영업비밀이자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복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원고의 첨단기술 문서 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 예외

(fair use exception)<sup>3)</sup>에 해당한다.

피 고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원고의 첨단기술 문 서들을 취득했을 때에는 이미 원고의 영업 비밀이 아니었다.

<sup>1)</sup> 금지적 구제 (injunctive relief)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일시적으로 현상의 유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sup>2)</sup>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어떤 사건이 사실상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법률의 판단으로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sup>3)</sup>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원문: <a href="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작물의 성격, 이용방법 및 태양,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04 판결 요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가 법원의 공개기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법원의 공개기록에 포함된 원고의 첨단기술 문서를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 워싱턴 포스트의 행위는 정당하다.

원고의 첨단기술 문서는 법원의 공개기록에 포함되어 대중에 공개되었고, 인터넷에도 공개되었다. 설령 여전히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이나 계약 위반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한 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책임이 없다. 피고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문서를 법원에서 복사한 것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불법적이거나비윤리적이지 않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워싱턴 포스트는 법적 책임이 없다.

또한 공개된 문서를 간단하게 인용한 것일 뿐이므로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을 승인한다.

#### 05 Key Point

영업비밀은 법원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허 소송 등에 있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에서 중요한 점은 영업비밀의 공개나 사용이 아니라 부적절한 수단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이다. 부적절한 수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